

# 정보보호연구소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| 번호 | 개정일자 | 개정자 (서명) | 번호 | 개정일자 | 개정자 (서명) |
|----|------|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|
| 1  |      |          | 16 |      |          |
| 2  |      |          | 17 |      |          |
| 3  |      |          | 18 |      |          |
| 4  |      |          | 19 |      |          |
| 5  |      |          | 20 |      |          |
| 6  |      |          | 21 |      |          |
| 7  |      |          | 22 |      |          |
| 8  |      |          | 23 |      |          |
| 9  |      |          | 24 |      |          |
| 10 |      |          | 25 |      |          |
| 11 |      |          | 26 |      |          |
| 12 |      |          | 27 |      |          |
| 13 |      |          | 28 |      |          |
| 14 |      |          | 29 |      |          |
| 15 |      |          | 30 |      |          |

## 정보보호연구소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정보보호연구소(이하 '연구소'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직무)**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정보보호 및 컴퓨터신기술의 이론 및 응용에 관한 연구
2. 정보보호 및 컴퓨터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양성과 산업체 연구원의 계속 교육
3. 정보보호 및 컴퓨터 관련 첨단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
4.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수행
5. 기타 관련된 사항

**제3조 (소장)**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4조 (조직)** 연구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연구소에 연구관리부, 정보관리부, 신기술연구부를 둔다.
-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연구원 또는 특별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③ 각 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  1. 연구관리부는 시설의 관리, 서무, 회계등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
  2. 정보관리부는 각종 교육의 지원, 출판, 섭외, 자료의 수집 및 관리,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
  3. 신기술연구부는 정보보호와 관련 컴퓨터 신기술 개발을 비롯한 정보보호, 보안 및 컴퓨터 신기술의 응용, 활용에 관한 연구

**제5조 (연구원 등)** ① 연구소에 연구원,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.
- ③ 특별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또는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
-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**제6조 (운영위원회)**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직전전임 소장 및 연구소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교수 이상의 대학교원, 관련연구기관 및 산업체 인사 등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③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,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  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
3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
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**제7조** (자문위원)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대학교원,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인사와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,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
**제8조**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연구소명칭 변경) 컴퓨터신기술연구소를 정보보호연구소로 명칭 변경 (2000년 3월 1일)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